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재정합의결정을 거칠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될 수 있는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재정합의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법원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제1항 신설)
 -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 제4조를 안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확인 절차에 각각 준용함(제3조의2제2항 전단 신설)
 - 이 경우 국민참여재판 의사 번복의 종기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은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공판준비기일”과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봄(제3조의2제2항 후단 신설)
 -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되, 안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송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함(제5조제1항)
 - 안 제5조제1항 본문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 확인서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6월 2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인

● 대법원규칙 제260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93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자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3.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3(간이조사위원 등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 ① 법 제293조의7제2항에 따른 간이조사위원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0조에 따른 재산가액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목의 방법 중 채무자의 업종 및 영업특성에 비추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가. 회계장부의 검토

나. 문서의 열람

다. 자산의 실사

라. 채무자 임직원에 대한 면담

마. 외부자료의 검색

바. 과거 영업실적을 통한 추세의 분석

사. 동종업계의 영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분석

2. 법 제91조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재산의 규모와 재산 내역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통합할 수 있다.

3.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채무자의 회생계획 또는 회생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요지만을 보고할 수 있다.

4.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채무자의 영업 전망, 거래처의 유지 가능성, 공익채권의 규모, 운영자금의 조달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만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법 제293조의7제3항에 따른 관리인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외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제71조의2 신설)
- 간이조사위원과 관리인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을 정함(제71조의3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